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내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모두누림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칙 일부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28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칙 제46호

모두누림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칙 일부 개정

모두누림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모두누림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칙’을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칙’으로 제명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중 ‘모두누림센터’를 ‘화성시 여성비전센터’로 한다.

제1조, 제7조, 제13조의 제2항 문구(용어) 정비

[별표 1] 체육시설 운영시간 내용(골프장, 스포츠과학센터 등) 일부 신설 및 명칭 정비

[별표 6] 프로그램 이용요금 내용(골프장, 스포츠과학센터) 일부 신설

[별지 제13호 서식] 을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내규심의위원회 의결을 얻은 후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까지의 사용·이용료의 감면기준과 환불기준은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용한 것으로 본다.